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4월 26일 18시 51분



행정복지센터와 직원

기본현황

관내기관단체

공지사항

등관내도 (ㄱ)

주민사랑방

## 2018.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(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는)

2018.09.19 조회수 753 등록자 김중호

□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?

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·의료·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□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?

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
◦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급시설에

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
◦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
◦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

◦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
◦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
◦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조례로 정한 사유

- 소득활동미미(간호·간병·양육), 기초수급 중지·미결정, 수도·가스 중단, 사회보험료·임차료 체납 등

◦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

◦ 단전된 때

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(가구원 1명 한정)의

실직(고용보험 미가입자, 실직 전 3개월간 근로한

경우 등) 및 휴·폐업,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

※ 주소득자의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

◦ 교정시설에서 출소(구금 1개월 이상, 6개월 이내 출소)한 자가 가족이 없고 생계 곤란한 경우

◦ 가족으로부터 방임,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18. 긴급지원 안내문(18.9.19).hwp (429 hit/ 19.0 KB) [미리보기](#)

목록

이전글

2018. 만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(독감) 예...

다음글

광복절,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...

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